

2022년도 제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4. 19.(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5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98건(안전번호 제2022-22084호~22981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2-22084호는 제품 홍보를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사안으로,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우리 심의위원회의 시정권고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관리자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게시자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2-22085호는 교과서의 교사용 지습서를 무단 게시한 사안으로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덧붙여 관리자가 시정권고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22948호~2298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를 배포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5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5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5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C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2.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72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2208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에 영상저작물(영화)의 이미지를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헌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2-22084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저는 부결 의견임.
- E 위원: 저도 부결 의견임. 타 쇼핑몰을 검색해 보니 심의대상 사이트와 유사하게 촬영 및 이용된 사진이 매우 흔하게 발견됨.
- 권헌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2-22084호는 공정이용에 포섭될 여지가 있는 점, 시정권고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게시자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2208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이라는 사이트에서 고등 국어 교사용 지도서를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본래는 교사에게만 제공되는 것인데, 아마 특정인에게 배포된 후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사이트에는 지도서뿐만 아니라 평가 문제지까지 게시되어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2-22085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2208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22086호~2294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중점’(영화)신비한 동물사전 (2016)’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22538호 ‘중점’(영화)신비한 동물사전 (2016)’은 2016. 11. 16.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640포인트에 판매 중임.
(‘[중점](영화)태일이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22596호 ‘[중점](영화)태일이 (2020)’은 2021. 12. 1 개봉한 한국 영화로 웹하드에서 210포인트에 판매 중임.
(‘[중점](영화)킹 리차드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22816호 ‘[중점](영화)킹 리차드 (2022)’은 2022. 3. 4. 개봉

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7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1,656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E 위원: 웹하드 계정은 시정권고를 몇 번 하여야 계정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OSP 별로 해당 계정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 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2-22086호~2294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C,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22086호~2294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22948호~2298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를 요청한 사안임. 보호원이 현재 우선조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방송 '◁◁◁'임.(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 해당 방송이 게시되어 있음.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22948호~2298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22084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제2022-22085호, 제2022-22948호~22981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2086호~2294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26.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